

제352회 임시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6.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영주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개정이유

- 하위규칙 준용 항(項) 삭제 및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른 “영업자”에 대한 용어 재정의 (안 제2조)
- 나.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3조)
 - “수익금” ⇒ “수입금”
- 다. 담당 명칭을 일관성 있게 변경 (안 제5조, 제6조)
 - “보건복지국장” ⇒ “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”
 - “식품의약품안전과장” ⇒ “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”
 - “위생관리담당사무관” ⇒ “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”
- 라. 하위규칙 준용을 규정한 항 삭제 (안 제5조 제4항)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6조의2)
 - “해촉” ⇒ “위촉 해제”

5. 검토의견

- 식품진흥기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음식문화개선, 모범업소 지원, 식중독예방 관리사업, 향토음식 관련사업 지원,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용자 지원 등을 위해 198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, 2016년도 말 11,298,163천원이 조성됨.
- 본 조례안은 하위규칙 준용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것임.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2조에서는,
기존 조례 상 “영업자”에 대한 정의가 “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”으로만 제한 규정되어있어, 대상의 포괄성 및 명확성이 부재함.
 - 사실상 “영업자”는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종사하는 자 중 같은 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, 이를 명확하게 재(再)규정 하였음.
 -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관련해,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“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”을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“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”으로 수정하였음.
 - 안 제5조에서는,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규정과 관련해, 행정기구 개편 시 조직 및 직급명칭의 변경에 따라 재(再)개정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,
“보건복지국장”을 “식품위생 업무담당국장”으로,
“식품의약품 안전과장”을 “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”으로,
“위생관리담당사무관”을 “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”으로 변경하고,
 - 또한, 동 조례보다 하위법령인 규칙의 준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

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는 하위법령을 준용하지 않는 바, 이를 삭제하였음.

- 안 제6조의2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수정하였음.

○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